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14일, 김현의원 등 3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3.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2.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2.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 현의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상파 방송들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재허가·재승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 불법방송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5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허가 등 처분과 관련한 기본법적 성격인 「행정절차법」이나 「행정기본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방송법」상 관계규정과 함께 고려할 때, 재허가

심의 지연으로 인한 무허가 방송문제는 방송사업자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음.

- 개정안은 신청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재허가 심의 지연 시 방송사업자들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므로, 허가 유효기간 등의 연장을 통해 이들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현행법 제18조제5항에서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허가 등이 취소되더라도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재허가 심의 지연 시 방송사업자들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과 시청자 피해 방지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허가뿐 아니라 「전파법」에 따른 허가도 필요하므로 추가 규정이 필요함.
- 방미통위와 한국방송협회·JTBC·MBN·YTN·연합뉴스TV 등 방송사업자들은 개정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김현의원, 이정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